

2013. 11월 심의결정 통계

1. 업종별 심의내용

결정구분 업종	계	주의 및 경고	광고수정	주의 · 경고 및 광고수정	광고중지	관계기관 통보	임시중지 명령요청
기초재							
식품 · 음료	11		5	3	3		
가정용품							
제약(의료기기)	3			1	2		
건강관련용품	11		6	4	1		
화장품 · 세제	2		1	1			
일반산업기기							
정밀사무기기							
전기 · 전자	1		1				
수송기기							
화학 · 공업							
건설 · 건재	14		14				
출판 · 교육							
의류 · 섬유							
유통	12		12				
금융 · 보험 · 증권							
서비스 · 오락							
관공서 · 단체							
의료	9				9		
그룹 · 기타	1				1		
계	64		39	9	16		

2. 심의결정이유별 내용

결정이유	계
공정성 · 윤리성 · 합법성 · 인간의 존엄성 · 진실성 위반 표현(4~7조)	64
광고의 품위상실, 선정성 표현(8조, 18조)	1
광고주 불표시(9조)	
소비자 오도 표현(10조)	55
주장의 무입증(11조)	49
추천, 보증(12조)	2
배타적인 광고(14조)	
자료 등의 인용(15조)	
부당비교 및 배타적 표현(16~17조)	
비과학적 생활태도 조장(19조)	
소비자 조사(20조)	
광고에 부적당한 언어사용(22조)	
어린이 · 청소년, 어린이 보호(23조, 24조)	
경품 · 할인특매, 사행심 조장, 미끼광고(28조, 29조)	
광고물의 식별 불가능(30조)	
식품광고의 소비자 오인 표현(31조)	12
주류 · 담배광고의 부당표현(32조, 33조)	1
효능효과 과신 · 과장(34조)	11
화장품광고의 소비자 오인 표현(35조)	2
의약품 및 의료 광고 소비자 오도 표현(36조, 37조)	12
금융 · 투자자문업 광고 소비자 오도 표현(38조, 39조)	
통신판매 광고 과장 표현(40조)	
학원, 학습지 등 광고 과장표현(42조, 43조)	
대리점 모집 광고 과장표현(44조)	12
부동산 광고 소비자 오도 표현(45조)	14
영화 · 비디오 광고 부당 표현(46조)	
기타	
계	235

※결정이유 건수가 결정 건수보다 많은 것은 한 결정에 2개 이상의 결정이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.